



**01 신청기간** 조기신청 : 2022년 9월 30일(금)까지

**02 부스신청방법 및 납입방법**



**03 전시회 참가규정**

**제1조 (용어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주최자'라 함은 "대구광역시"를 말한다.
3. '주관사'라 함은 "엑스코"를 말한다.
4. '전시회'라 함은 "2022 대구크리스마스페어(DAEGU CHRISTMAS FAIR 2022)"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사에 제출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주관사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전시회 사정에 따라 참가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 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기술지원신청서 등 제반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부스배정)**

주관사는 참가신청 접수, 참가비 입금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자별 부스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전시장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관사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사는 전시회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관사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 교환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 측의 원상회복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6. 주관사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참가비 납입)**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사무국으로부터 인보이스를 수령하고 1주일 이내에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2022년 10월 26일(수)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사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가 참가비, 기술지원비 등 제반비용 미납 시, 주관사는 완납 시까지 선택적으로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6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 취소 또는 축소할 경우 전시자는 주관사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하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관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 참가취소 및 축소

- 2022년 9월 1일 이전 : 총 참가비의 3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22년 9월 1일 ~ 9월 30일 : 총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22년 10월 1일 이후 : 총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 위약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사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전시품 진열 및 홍보활동)**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 할 경우 주관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사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주관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경비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관사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 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규정)**

1.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주관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주관사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